

주요그룹 토론회 기조 발제

박영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고문

금번 제5회 지방의제21전국대회에서 WSSD의 파트너십 총회의 회의방식을 원용한 주요 그룹 토론회의 슬로건은 <지방의제21에서 지방행동21로>이다. 이 슬로건은 WSSD에서 가장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했던 지방정부회의에서 도출된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의 핵심표어이다. 지방행동21은 향후 10년간의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슬로건(motto)이고 지방의제와 실천계획의 실천의 위임(mandate)사항이고 지속가능성을 실천으로 옮기는 도시와 국가 그리고 단체들의 운동(movement)지침으로 활용된다.

WSSD에서 이토록 '행동'이 강조된 것은 1997년도에 개최된 리우+5였던 유엔환경특별총회의 의제21의 5년간의 평가에서 그리고 리우+10이었던 WSSD에서의 10년간의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바로 실천이 없다는 점이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향후 10년간의 지방의제21은 더 이상 실천전략계획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제(agenda)를 행동(action)으로, 그리고 계획(plan)에서 실천(practice)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WSSD 지방정부회의의 선언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9개 주요 그룹이 각기 그동안의 지방의제21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방의제21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게 되어있다. 이 토론회의 의의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위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행동계획의 실천이라는 의제21의 정신을 되살리는 한편 주요그룹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지방의제21의 실질적인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공동이해가 필요하다.

1) 지방의제21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의 수립현황은 90%이상의 지자체가 이미 수립 완료하였거나 수립 중에 있어서 WSSD에서 격찬을 받은 바 있으며 1998년도 이래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구성되어 전국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2000년도부터는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의제21이 보고서 또는 문서에 머물고 있어서 활성화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2) 지방의제21의 활성화 저해요인

가장 기본적인 저해요인은 지방자치체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협치(governance)의 형태인 시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파트너십 기구인 지방의제21 실천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체가 예산운영권과 인사권 그리고 기구개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중앙정부가 유엔의 mandate인 의제21의 이행문제를 정부의 정책과제로서 공식화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세계의 국가의제21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1993년도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지방정부의 의제21 실천노력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의제21 또는 지속가능발전문제를 환경보전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지방의제21 실천기구를 지방정부의

환경관련부서에 묶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들 간의 통합정책을 견인해내기 위해서는 실천기구를 기획조정기구 또는 단체장 직속으로 관장해야 한다.

셋째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방의제21이건 지방행동21이건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전문인력도 함께 하는 실무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70%의 실천기구에 실무진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그들의 신분보장이나 예산운영이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된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

3) 지방의제21의 활성화방안의 요건들

① 활성화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국가지속가능발전촉진법> 등을 제정하여 지방의제21 추진을 제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② WSSD의 이행계획 제147조에 의거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자치단체장 직속기구로 구성하고 지방행정의 통합정책화를 추진한다.

③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추진기구와의 유기적인 연대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러한 절차가 2년마다 국가가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관련 보고서의 내실을 기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

④ 지역사회와 지속가능발전성과를 측정해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성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⑤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으로서 다양한 갈등사항을 조정해낼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가지도록 한다.

4)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한 인식

금번 대회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화된 국내외 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WSSD의 10개의 이행계획에 대한 실천의무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참여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수반되는 도전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WSSD 이행계획에 대한 대책은 이미 숙지하고 있어서 제한된 지면에서는 생략하기로 하나 각 지역사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직면하게 된 도전들을 외면할 수 없다.

① 참여정부가 주요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각의 지자체마다에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력체인 <지역혁신위원회> 또는 지역갈등조정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 등을 출범시킨다고 한다. 균형발전을 위한 기구는 이미 지역에 따라 구성이 완료된 곳도 있다. 이는 지방의제21 실천기구와 그 기능이 유사하여 역할수행이 중첩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점이 있다면 새로운 기구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자치체의 경우 제한된 지도력으로 의제기구의 지도력이 겸임하게 될 수도 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치하게 되는 경우 소모적일 수 있다.

이를 예측한 전국협의회에서 의제실천기구가 이를 대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측에 제안하기도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측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은 지속가능발전 mind가 회박한 가운데 새로운 국정 목표로서 <2만 달러 시대를 위한 국가재조론>을 공식화한 것이다. 오늘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환영해야 마땅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1000달러 목표의 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빚어졌던 환경파괴 및 노동자 탄압 등의 시

행착오가 반복되는 ^되 않는까 하는 것이다.

③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지속가능발전개념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환경성 고려가 배제된 채 국가의 주요정책들이 제각각 고유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해 달리고 있는 점 등이다.

✓ 본 9개 주요그룹의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제21-지방행동21 ^{추진} 당면문제를 직시하고 활성화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재까지 정부시책의 주변에 머물고 있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모에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요그룹 토론회 기초 발제

박영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고문

금번 제5회 지방의제21전국대회에서/WSSD의 파트너십 총회의 회의방식을 원용한/주요그룹 토론회의 슬로건은/<지방의제21에서 지방행동21로>이다. 이 슬로건은 WSSD에서/가장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했던/지방정부회의에서 도출된/<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의 핵심표어이다. 지방행동21은/향후 10년간의/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슬로건(motto)이고/지방의제와 실천계획의 실천의 위임(mandate)사항이고/지속가능성을 실천으로 옮기는/도시와 국가 그리고 단체들의 운동(movement)지침으로 활용된다.

WSSD에서 이토록 '행동'이 강조된 것은/1997년도에 개최된 리우+5였던 유엔환경특별총회의/의제21의 5년간의 평가에서/그리고 리우+10이었던 WSSD에서의 10년간의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바로 실천이 없다는 점이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향후 10년간의 지방의제21은/더 이상 실천전략계획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제(agenda)를 행동(action)으로,/그리고 계획(plan)에서 실천(practice)으로/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WSSD 지방정부회의의 선언이다.

이 토론회에서는/9개 주요 그룹이 각기/그동안의 지방의제 21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그것을 기반으로 지방의제21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게 되어있다. 이 토론회의 의의는/우리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위한/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행동계획의 실천이라는/의제21의 정신을 되살 리는 한편/주요그룹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지 방의제21의 실질적인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위의 목적달성에는

이러한 토론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공동이해가 필요하다.

1) 지방의제21의 현주소

현실적으로 지방의제21의 수립현황은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의 수립현황은 90%이상의 지자체가 이미 수립 완료하였거나 수립 중에 있어서 WSSD에서 격찬 을 받은 바 있으며/1999년도 이래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구성되어/전국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고/2000년도부터 는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아직도 지방의제21이 보고서 또는 문서에 머물고 있어 서/활성화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2) 지방의제21의 활성화 저해요인

가장 기본적인 저해요인은 지방자치체가 실시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협치(governance)의 형태인/시민, 기업 그리고 정부

각주요그룹이 지방의제21의 성과를 평가하고 활성화방안을 모색 하는데에 공통적인 기본문제 몇가지를 지적해 주려고 합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지방의제21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N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95년도 이래

행치를 함양하는 데 있어
의 파트너십 기구인/지방의제21 실천기구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체가 예산운영권과 인사권 그리고 기구
개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중앙정부는 이를 허용하
지 않고 있다. 그것은 중앙정부가 유엔의 mandate인/의제21
의 이행문제를 정부의 정책과제로서 공식화하지 않은데서 비
롯된다.

세계의 국가의제21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유엔지속가능발
전위원회가 1993년도 발족한 이래/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국내 지방정부의 의제21
실천노력을/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우리 정부가/의제21 또는 지속가능발전
문제를/환경보전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지방의제21 실천기구를 지방정부의
환경관련부서에 묶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들 간의 통합정책을 견인해내기 위해
서도 실천기구를 기획조정기구 또는 단체장 직속으로 관장해
야 한다.

셋째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지방의제21이건 지방
행동21이건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민간부문의 전
문인력도 함께 하는 실무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70%
의 실천기구에 실무진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그들의 신분보
장도

장이나 예산운영이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사익일뿐.*

2028년 11월

3) 지방의제21의 활성화방안의 요건들이 무엇인가?

① 활성화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데약이되 지방기초강인 것은)* 한편 <국가지속가능발전촉진법> 등을 제정하여 지방의제21 추진을 제도화 *(한편) <국가지속가능발전촉진법> 등을 제정하여 지방의제21 추진을 제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부터는 지속가능한 실천과제를 확충 없애야.*

② WSSD의 이행계획 제147조에 *(이제부터는)* 의거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자치단체장 직속기구로 구성하고/지방행정의 통합 정책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실천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③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추진기구와의 유기적인 연대를 구축하여/주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절차가/2년마다 국가가/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관련 보고서의/내실을 기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 *(최고보고서로 되라는 것)*

④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성과를 측정해내기 위해서는/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성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⑤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지역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대화의 장으로서 다양한 갈등사항을 조정해낼 수 있는/기능과 능력을 가지도록 한다. *(이제부터는)*

이상인 것은 물론이긴 하지만

4)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대부분

금번 대회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화된 국내외 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WSSD의 10개의 이행
계획에 대한 실천의무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부과되어 있
다는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참여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수반되는 도전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WSSD 이행계획에 대한 대책은 이미 숙지하고 있어서 제한
된 시각과 매상 지면에서는 생략하기로 하나 각 지역사회에서/지방의제
21 추진기구가 직면하게 된/국내적인 도전들은 외면할 수
없다. 기대되는 집합 물건을 해나.

은 지방의제 21 추진에
중요한 리제이션으로 크게 환영
받을 바이다. 문제는 이...

① 참여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지방분권화와 지
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각이 지자체마다에 정부, 기업 그리
고 시민사회의 협력체인/ <지역혁신위원회> 또는 지역갈등조
정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 등을 출범시킨다고 한다. 균형발전
을 위한 기구는 이미 지역에 따라 구성이 완료된 곳도 있다고 한다.
이는 지방의제21 실천기구와/그 기능이 유사하여 역할수행
이 중첩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점이 있다면/새로운 기구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배경으로/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기초자치체의 경우 제한된 지도력으로/의제기
구의 지도력이 겸임하게 될 수도 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
지만 대치하게 되는 경우 소모적일 수 있다.

이를 예측한 전국협의회에서 의제실천기구가 이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측에 제안하기도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다.

②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측에서/특히 주목해야 할 참여정
부의 정책방향은/지속가능발전 mind가 희박한 가운데 새로
운 국정 목표로서 <2만 달러 시대를 위한 국가개조론>을 공
식화한 것이다. ^{앞서} 오늘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환
영해야 마땅하지만/우려되는 것은 1000달러 목표의 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빚어졌던 환경파괴 및 노동자의 인권 탄압
등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대개 우려가 된다}

③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참여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정
책결정과정에서/지속가능발전개념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대}
정부의 모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환경성 고려가 배제된
채/국가의 주요정책들이 제각각 고유 목표 달성의/극대화를
위해 달리고 있는 점 등이다. ^{앞서}

본 9개 주요그룹의 토론회를 통해/지방의제21-지방행동21
추진기구가/당면문제를 직시하고/활성화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의제21} 현재까지 정부시책의 주변에 머물고 있던 지역사회의 지속가
능한 발전도모에/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앞서}

주요그룹 토론회 기초 발제

박영숙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고문

금번 제5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에서 WSSD의 파트너십 총회의 회의방식을 원용한 주요 그룹 토론회의 슬로건은 <지방의제21에서 지방행동21로>이다. 이 슬로건은 WSSD에서 가장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했던 지방정부회의에서 도출된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의 핵심표어이다. 지방행동21은 향후 10년간의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슬로건(motto)이고 지방의제와 실천계획의 실천의 위임(mandate)사항이고 지속가능성을 실천으로 옮기는 도시와 국가 그리고 단체들의 운동(movement)지침으로 활용된다.

WSSD에서 이토록 '행동'이 강조된 것은 1997년도에 개최된 리우+5였던 유엔환경특별총회의 의제21의 5년간의 평가에서 그리고 리우+10이었던 WSSD에서의 10년간의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바로 실천이 없다는 점이였다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향후 10년간의 지방의제21은 더 이상 실천전략계획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제(agenda)를 행동(action)으로, 그리고 계획(plan)에서 실천(practice)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WSSD 지방정부회의의 선언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9개 주요 그룹이 각기 그동안의 지방의제21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방의제21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게 되어있다. 이 토론회의 의의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위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행동계획의 실천이라는 의제21의 정신을 되살리는 한편 주요그룹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지방의제21의 실질적인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공동이해가 필요하다.

1) 지방의제21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의 수립현황은 90%이상의 지자체가 이미 수립 완료하였거나 수립 중에 있어서 WSSD에서 격찬을 받은 바 있으며 1999년도 이래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가 구성되어 전국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2000년도부터는 대통령차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의제21이 보고서 또는 문서에 머물고 있어서 활성화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2) 지방의제21의 활성화 저해요인

가장 기본적인 저해요인은 지방자치체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화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협치(governance)의 형태인 시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파트너십 기구인 지방의제21 실천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체가 예산운영권과 인사권 그리고 기구개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중앙정부가 유엔의 mandate인 의제21의 이행문제를 정부의 정책과제로서 공식화하지 않은데서 비롯된다.

세계의 국가의제21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1993년도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지방정부의 의제21 실천노력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의제21 또는 지속가능발전문제를 환경보전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지방의제21 실천기구를 지방정부의 환경관련부서에 묶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들 간의 통합정책을 견인해내기 위해서는 실천기구를 기획조정기구 또는 단체장 직속으로 관장해야 한다.

셋째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방의제21이건 지방행동21이건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전문인력도 함께 하는 실무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70%의 실천기구에 실무진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그들의 신분보장이나 예산운영이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

3) 지방의제21의 활성화방안의 요건들

① 활성화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국가지속가능발전촉진법> 등을 제정하여 지방의제21 추진을 제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② WSSD의 이행계획 제147조에 의거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자치단체장 직속기구로 구성하고 지방행정의 통합정책화를 추진해야한다.

③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추진기구와의 유기적인 연대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러한 절차가 2년마다 국가가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관련 보고서의 내실을 기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

④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성과를 측정해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성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⑤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으로서

다양한 갈등사항을 조정해낼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가지도록 한다.

4)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한 인식

금번 대회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화된 국내외 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WSSD의 10개의 이행계획에 대한 실천의무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참여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수반되는 도전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WSSD 이행계획에 대한 대책은 이미 숙지하고 있어서 제한된 지면에서는 생략하기로 하나 각 지역사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직면하게 된 국내적인 도전들은 외면할 수 없다.

① 참여정부가 주요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각이 지자체마다에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력체인 <지역혁신위원회> 또는 지역갈등조정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 등을 출범시킨다고 한다. 균형발전을 위한 기구는 이미 지역에 따라 구성이 완료된 곳도 있다. 이는 지방의제21 실천기구와 그 기능이 유사하여 역할수행이 중첩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점이 있다면 새로운 기구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자치체의 경우 제한된 지도력으로 의제기구의 지도력이 겸임하게 될 수도 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치하게 되는 경우 소모적일 수 있다.

이를 예측한 전국협의회에서 의제실천기구가 이를 대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측에 제안하기도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측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은 지속가능발전 mind가 희박한 가운데 새로운 국정 목표로서 <2만 달러 시대를 위한 국가개조론>을 공식화한 것이다. 오늘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환영해야 마땅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1000달러 목표의 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빚어졌던 환경파괴 및 노동자의 인권 탄압 등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③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환경성 고려가 배제된 채 국가의 주요정책들이 제각각 고유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해 달리고 있는 점 등이다.

본 9개 주요그룹의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제21-지방행동21추진기구가 당면문제를 직시하고 활성화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재까지 정부시책의 주변에 머물고 있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모에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